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19. . . (제 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〇〇〇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부처 합동대책으로 발표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과대포장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자제품류에 대해 포장방법공간비율 규제를 적용하고(안 제7조제2호사목 신설),

단위제품의 포장 규제는 적용되고 있으나, 종합제품류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어 있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 등을 종합제품 규제대상 품목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아목)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제7조제2호아목(중전의 사목) 중 “신변잡화류”를 “신변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상제품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p> <p>1. (생 략)</p> <p>2.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생 략)</p> <p><신 설></p> <p style="padding-left: 20px;">사.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의 샘플용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p>	<p>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가. ~ 바. (현행과 같음)</p> <p>사. <u>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u></p> <p>아. -----</p> <p>-----</p> <p>-----</p> <p>-----</p> <p>-----</p> <p>-----</p> <p>-----</p> <p>-----</p> <p>-----</p>

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3. (생략)

--- 신변잡화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44) 201-7352